

공시지침

소관부서 : IR부

제 정 : 2019.01.11.

개정(1) : 2019.08.07.

개정(2) : 2019.11.08.

개정(3) : 2020.06.03.

개정(4) : 2021.08.02.

개정(5) : 2022.06.10.

개정(6) : 2022.12.05.

개정(7) : 2023.12.28.

개정(8) : 2025.04.14.

개정(9) : 2026.01.15.

개정(10) : 2026.07.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그룹공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는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은 공시업무 취급 시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규정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2022.12.05. 개정>

1. “주요 자회사”란 규정 제3조 제11항에서 정의한 '자회사' 중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직전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가액(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지주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자회사를 말한다.
2. “주요 종속회사”란 규정 제3조 제11항에서 정의한 '종속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종속회사를 말한다.

제4조(체크리스트) ① 공시정보의 최초작성자, 검토자 및 승인자는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유효성 및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자는 최초작성자와 독립하여 공시정보를 검토할 수 있는 자를, 승인자는 최초 작성자의 부서장을 말한다.<2020.06.03., 2026.07.10. 개정>

1. 'I. 체크리스트 1 (최초작성단계)'
2. 'II. 체크리스트 2 (취합작성단계)'

- ② 체크리스트 작성자, 검토자 및 승인자는 제1항 각 호의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직접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단, 우리금융그룹 포털 공시통제시스템(이하 “공시통제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직접 전자서명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갈음할 수 있다.<2020.06.03., 2022.06.10., 2026.07.10. 개정>
- ③ 본 조에 따른 체크리스트 작성은 제2장 제1절, 제2절, 제3절, 제3장 제1절, 제2절의 공시를 대상으로 한다.<2020.06.03. 신설>
- ④ 공시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취합하여 공시통제에 대한 책임근거를 확보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취합총괄표를 작성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의 작성양식은<별첨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공시를 마친 동일한 기준일 시점의 다른 공시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작성, 취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체크리스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서약서) ① 공시정보를 최초로 작성하는 책임자는 해당 공시 문서를 검토하고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2020.06.03. 개정>

- 1. 부서장
- 2. 자회사 및 종속회사의 대표이사
- ② 서약자는 제1항 각 호의 서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직접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단, 공시통제시스템에서 직접 전자서명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갈음할 수 있다.<2020.06.03., 2022.06.10. 개정>
- ③ 본 조에 따른 서약서 작성은 제2장 제1절, 제2절, 제3절, 제3장 제1절, 제2절의 공시를 대상으로 한다.
- ④ 공시담당자는 제1항의 서약서를 모두 취합하여 공시통제에 대한 책임근거를 확보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약서 취합총괄표를 작성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의 작성양식은<별첨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공시를 마친 동일한 기준일 시점의 다른 공시에 대한 서약서가 작성, 취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국내공시에 대한 서약서와 해외공시에 대한 서약서 상호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증대상) 규정 제21조에 따라 서면으로 인증해야 하는 대상은 국내외 공시관련법규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공시를 말한다.

- 1. 사업보고서
- 2. 분·반기보고서
- 3. 증권신고서
- 4.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 5. Form 20-F
- 6. 주요사항보고서

제2장 국내공시

제1절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

제7조(공시대상)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이란 자본시장법 제159조 및 제160조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말한다.

제8조(주관부서) ①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및 취합은 IR부에서 주관한다.

② 제1항의 주관부서는 지주회사가 자본시장법 제159조의 제1항의 제출대상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제출시한)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은 연 4회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며, 그 제출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시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할 경우 그에 따른다.

1. 사업보고서 :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2. 분, 반기보고서 : 매 분·반기 결산일 경과 후 45일 이내

제10조(작성내용) ①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각 분기, 반기, 결산기까지의 회사의 현황, 사업내용 및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68조 및 제17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작성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감독원 통합 제출지원 소프트웨어”상의 전자문서편집기에 의한다

제11조(작성방법) ① 주관부서는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할 세부항목을 업무성격에 따라 해당부서(자회사 및 종속회사 포함)에 배분한 후 작성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세부항목별 최초작성자를 “DC&P 마스터”의 형태로 별도 관리하며, 이를 공시통제의 책임근거로 활용한다.

제2절 발행공시-증권신고서 등

제12조(공시대상) 발행공시-증권신고서 등이란 자본시장법 제118조 내지 제132조에 의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13조(주관부서) 발행공시-증권신고서 등의 작성 및 취합은 재무관리부에서 주관한다.

제14조(작성내용) ① 발행공시-증권신고서 등은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및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작성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감독원 통합 제출지원 소프트웨어”상의 전자문서편집기에 의한다.

- 제15조(작성방법)** ① 주관부서는 발행공시-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할 세부항목을 업무성격에 따라 해당부서(자회사 및 종속회사 포함)에 배분한 후 작성을 의뢰한다. 다만, 최근에 제출한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세부항목별 최초작성자를 "DC&P 마스터"의 형태로 별도 관리하며, 이를 공시통제의 책임근거로 활용한다.

제3절 정기공시-경영공시

제16조(공시대상) 정기공시-경영공시란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경영공시 중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제1항에 의한 경영공시를 말한다.

제17조(주관부서) 정기공시-경영공시의 작성 및 취합은 IR부에서 주관한다.

- 제18조(제출시한)** ① 정기공시-경영공시는 연4회 작성하며,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한다.
- ② 지주회사는 주주,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가 제1항의 공시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및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정의된 회사를 의미한다)의 본·지점의 지정장소에 인쇄물 등을 비치하거나 고객전용 컴퓨터 등을 통해 전자문서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3년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한 분기 공시의 경우는 지주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할 수 있으며 공시기간은 당해 회계연도 결산결과 공시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작성내용) 제16조의 공시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작성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 금융지주회사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에 따른다.

- 제20조(작성방법)** ① 주관부서는 정기공시-경영공시 등에 기재할 세부항목을 업무성격에 따라 해당 부서(자회사 및 종속회사 포함)에 배분한 후 작성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세부항목별 최초작성자를 "DC&P 마스터"의 형태로 별도 관리하며, 이를 공시통제의 책임근거로 활용한다.

제4절 수시공시

- 제21조(공시대상)** ① 수시공시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장 및 제3장, 자본시장법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4장 등에 의한 수시공시-일반공시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의 제3항에 의한 수시공시-경영공시를 말한다.
- ② 제1항의 수시공시-일반공시는 다음의 각 호로 구성된다.

1. 주요경영사항·주요사항보고서
2. 공정공시
3. 자율공시
4. 조회공시

③ 제2항 각 호의 공시사항 중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48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의4에 따른 영문공시 대상 사항은 영문으로 공시한다.<2026.07.10. 신설>

제22조(주관부서) ① 수시공시의 작성 및 공시는 IR부에서 주관한다.

② 제1항의 주관부서는 특정 사항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의 대상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주요경영사항·주요사항보고서) ① 지주회사가 수시공시하여야 하는 주요경영사항·주요사항보고서는 당일공시사항 및 익일공시사항으로 나누어지며, 주요경영사항의 세부항목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에, 주요사항보고서의 세부항목은 자본시장법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에 의한다.

② 지주회사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자회사 및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서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항목 중 “주요 자회사” 및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항목은 (별첨3)과 (별첨4)에 따른다.

제24조(공정공시) ① 지주회사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15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공정공시정보제공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실 및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2.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3.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4. 주요경영사항 공시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공시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② 지주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공정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주요 자회사”의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지주회사의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자율공시) 지주회사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8조에 따라 주요경영사항 외에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하여야 한다.

제26조(조회공시) 지주회사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이 지침 제23조

내지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공시를 요구 받았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27조(수시공시-경영공시)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1. 부실자산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제5절 국내 기타공시

제28조(국내 기타공시) ①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 발행공시-증권신고서 등, 정기공시-경영공시, 수시공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이외에 공시하여야 할 기타공시의 종류와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0.06.03., 2021.08.02., 2022.12.05. 개정>

1.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의 공고: 회계부
 2. 상법상의 회사의 계산과 관련한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회계부
 3.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관련한 정관 등의 비치·공시: 업무 소관부서. 다만, 정관은 전략기획부, 주주총회의 의사록은 IR부에서 주관<2023.12.28. 개정>
 4.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및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상황 보고: 업무소관부서. 다만, 임원의 주식소유상황 보고는 IR부에서 주관
 5.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 및 제83조에 따른 신고사항 : IR부.
 6.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5조의3(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에 따른 공시: 업무소관부서. 다만, 제45조의2 제6항 및 제45조의3 제5항에 따른 공시는 IR부에서 주관
 7. 기타 : 업무소관부서
- ②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공시사항은 주관부서가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장 해외공시

제1절 정기공시-Form 20-F

제29조(공시대상) 정기공시-Form 20-F란 Section 13(a) or 15(d)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에 의한 annual or transition report를 말한다.

제30조(주관부서) 정기공시-Form 20-F의 작성 및 취합은 IR부에서 주관한다.

제31조(제출시한) 정기공시-Form 20-F는 연 1회 작성하며, 관련법령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SEC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작성내용) 정기공시-Form 20-F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결산기까지의 회사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SEC에서 정하는 Form에 따라 작성한다.

제33조(작성방법) ① 주관부서는 정기공시-Form 20-F에 기재할 세부항목을 업무성격에 따라 해당 부서(자회사 및 종속회사 포함)에 배분한 후 작성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세부항목별 최초작성자를 "DC&P 마스터"의 형태로 별도 관리하며, 이를 공시통제의 책임근거로 활용한다.

제2절 발행공시-Form F-1, F-3 등

제34조(공시대상) 발행공시-Form F-1 및 F-3란 The Securities Act of 1933에 의한 Registration Statement를 말한다.<2020.06.03. 개정>

제35조(주관부서) 발행공시-Form F-1 및 F-3의 작성 및 취합은 IR부에서 주관한다.

제36조(작성내용) 발행공시-Form F-1 및 F-3은 유가증권발행개요 및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을 SEC에서 정하는 Form에 따라 작성한다.

제37조(작성방법) ① 주관부서는 발행-Form F-1 및 F-3에 기재할 세부항목을 업무성격에 따라 해당부서(자회사 및 종속회사 포함)에 배분한 후 작성을 의뢰한다. 다만, 최근에 제출한 정기-20-F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세부항목별 최초작성자를 "DC&P 마스터"의 형태로 별도 관리하며, 이를 공시통제의 책임근거로 활용한다.

제3절 수시공시-Form 6-K

제38조(주관부서) 수시공시-Form 6-K의 작성 및 공시는 IR부에서 주관한다.

제39조(공시대상) ① 지주회사와 주요 자회사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시한다.<2020.06.03. 개정>

1. 제2장 국내공시에 의하여 외부에 공시되는 정보
2. 주식 및 주식관련 증서가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 중 해당 거래소에 의하여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보
3. 주주에게 배포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

4. 각 호에도 불구하고, 공시 대상 국가의 법령 등에 근거하여 지주회사의 해외공시 자문 변호인 등과 협의 후 공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사업목적의 변경
2. 이사(이하 "경영진")의 변경 또는 지배구조의 변동
3. 중대한 자산의 처분 및 취득
4. 파산 및 회사정리
5. 외부감사인의 변경
6. 재무상태 또는 경영실적
7. 중대한 소송의 진행
8. 주식/채권 및 그 담보물의 변경
9. 발행채권의 지급 불능
10. 유통주식, 차입금 또는 발행채권의 현저한 증감
11. 주주총회의 결과
12. 경영진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실질주주와의 거래
13. 경영진에 대한 옵션(Option) 부여 및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
14.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정보

제4절 Non-U.S. Listing Agreement 등에 의한 통지사항

제40조(의무사항) ① 지주회사가 NYSE상장을 위하여 2003년 9월 29일자로 NYSE와 맺은 협약과 그 협약에 부속된 Letter(이하 "Non-U.S. Listing Agreement 등")에 의하여 IR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NYSE에 통지한다.<2020.06.03. 개정>

1. 사업목적의 변경
2. 경영진의 변경
3. 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종속회사가 회사의 재무구조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또는 타회사의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4. 정관변경(안) 및 관련 주주통지문
5. 정관변경사항 또는 관련 주주총회 의결사항
6. NYSE에 상장된 American Depositary Shares(이하 "ADS"라 한다)가 시장가격보다 높게 직·간접적으로 매매된 사실을 경영진이 공식적으로 인지한 경우
7. 시장에서 취득 가능한 ADS 수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의결권신탁계약이나 예탁계약의 제안 또는 체결을 경영진이 공식적으로 인지한 경우
8. 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자회사의 자본잉여금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감소가 외부감사인에 의하여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Form 20-F에 기재 포함)
9. 기타

② 지주회사는 Non-U.S. Listing Agreement 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Form 20-F에 기재
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로 인하여 발행될 수 있는 주식의 총수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 중에 발행된 주식의 총수
다. 당해 회계연도 중에 이사에게 부여되어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총수
2. NYSE가 보안유지를 전제로 요청한 비공개 정보의 제공
3. 분기별 결산자료를 국내언론과 동시에 미국언론에 발표

제5절 NYSE상장규정집에 의한 통지사항

제41조(통지사항) ① IR부는 NYSE에서 발행하는 Listed Company Manual(이하 "NYSE상장규정집"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NYSE에 통지 또는 제출한다.<2020.06.03., 2026.07.10. 개정>

1. 주주통신문
2. 주식명의개서 대행기관 등의 변경
3. 외부감사인의 변경
4. 지주회사의 사업목적의 중대한 변화
5. 지주회사 또는 그의 자회사의 대한 상당한 규모의 자본잉여금 부담 발생에 대한 사전통지
6. 주주명부 폐쇄
7. 발행주식에 관련된 Mortgage/trust indenture하에 납입된 collateral이 있는 경우, 해당 collateral 제거 및 변경
8. 전환주식의 전환 비율 및 권리 등의 변화
9. 상장주식의 현저한 유동성 감소
10. 지주회사의 이사 및 임원의 변경
11.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중대한 자산 및 보유 주식의 처분
12. 배당 및 관련주식 배정
13. 상장주식의 형식 및 성격의 변경
14. 상장증권의 이자 지급 불능
15. 조건부상장증권의 이자 지급 불능
16. 상장주식의 배당, 이자 및 원금과 권리에 관한 중대한 소송 및 파산, 회사정리 등에 관한 소송진행
17. 주주총회의 소집
18. 상호 변경
19. 지주회사 사업의 성격의 변동
20. 자사주의 재발매를 통한 outstanding securities량의 변화
21. 명의개서정지 기준일
22. 상장주식의 상황

23. 상장주식의 권리변동

24. 신주인수권의 부여

② IR부는 NYSE 상장규정집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문서들을 정해진 기한 내에 NYSE에 제출한다.

1. NYSE에 상장신청서 제출시 필요한 관련서류

2. 주주들에게 배포된 Proxy materials 및 관련서류

3. 정관 변경에 대한 주주통신문과 변경된 정관 사본 및 관련서류

제6절 해외 기타공시

제42조(해외 기타공시) ① 공시지침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 정한 공시사항 이외에 공시하여야 할 해외 기타공시의 주관부서는 업무소관부서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시사항은 주관부서가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공시위원회

제43조(공시위원회 구성) ① 공시위원회는 공시책임자, IR부장, 재무관리부장, 회계부장, 리스크관리부장, 준법정책부장으로 구성한다.<2019.08.07., 2019.11.08., 2026.01.15.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시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관련 부서의 부서장, 내부변호사 또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의 재무담당 임원 또는 부서장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할 수 있다.<2019.11.08. 개정>

③ 공시위원회 위원장은 공시책임자로 하며, 위원장이 휴가, 출장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시위원회 간사는 IR부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의 준비, 회의록 및 자료의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44조(업무) ① 공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통제의 점검결과에 근거한 공시통제의 적정성 판단

2. 공시문서의 허위기재 및 기재누락에 대한 확인

3. Form 20-F 및 사업보고서의 제출 전 그 적정성에 대한 심의

4. 공시문서 세부항목 작성 배분에 대한 이견 조정 및 결정

5. 공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전 심의

6. 공시관련법규의 이행을 위한 조치

7. 공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45조(권한) ① 공시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공시사항과 관련된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열람권
 2. 공시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권
 3. 공시사항과 관련된 직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권
- ② 공시위원회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지주회사가 지정한 법무법인 등에 대해 공시와 관련한 자문 및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회의 개최) ① 공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공시문서 제출 전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
 2. 정기공시-Form 20-F<2025.04.14. 개정>
 3. 자율공시-기업가치 제고 계획<2025.04.14. 개정>
- ② 위원장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부의사항 등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7조(의결방법) ① 공시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 공시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에 의한 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서면에 의하여 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제1항의 정족수를 계산한다.

제48조(의사록) 공시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9조(준용)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2장 국내공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본시장법령 및 동 감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공정공시 운영기준, 금융지주회사법령 및 동 감독규정,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3장 해외공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미국 증권거래법, NYSE상장규정집,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0조(벌칙)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등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0: 2019.01.11.)

이 지침은 2019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 2019.08.07.)

이 지침은 2019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2019.11.08.)

이 지침은 2019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2020.06.03.)

이 지침은 2020년 06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2021.08.02.)

이 지침은 2021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2022.06.10.)

이 지침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2022.12.05.)

이 지침은 2022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2023.12.28.)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2025.04.14.)

이 지침은 2025년 0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 2026.01.15.)

이 지침은 2026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2026.07.10.)

이 지침은 2026년 0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I. 체크리스트 1.
(최초작성단계)

보고서명: _____

작성일자: _____

[점검항목]

점검목적	통제활동				점검내용	수행여부			
	A	C	V	T		Y	N	N/A	예외사항
계산검증	X				정량적 정보의 비율 및 합계에 대한 계산검증을 수행하여 정량정보의 비율 및 합계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였는가?				
문서검사	X				공시항목(Item)별 작성내역에 대한 맞춤법검사 및 문서오류검사를 실시하여 작성내역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표기단위	X		X		공시항목(Item)별 작성내역의 표기단위가 실제로 작성한 단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는가?				
대사확인	X	X			재무정보(재무제표 및 계정잔액 등)을 표시하는 공시항목(Item)의 경우, G/L(총계정원장)과 대사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X	X			동일한 작성 기준이 적용되는 공시항목(Item)에 대하여, 사업보고서·경영공시·업무보고서 등 기타 관련 공시자료 간 데이터가 상호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는가?				
	X	X			공시항목(Item)별 작성내역을 국내외 기(既) 공시한 자료와 대사하여 공시자료 간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X	X			회계연도간 비교표시되는 공시항목(Item)의 경우, 비교표시되는 작성내역을 전년도/전반기 보고서 등과 대사하여 공시자료 간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기준시점	X		X	공시항목(Item)별 작성내역을 작성기준일(결산일)시점으로 작성하였는가? 작성기준일(결산일)이 실제내용상의 기준일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점차이를 주기표시하였는가?				
완전성	X	X		“N/A(해당사항 없음)”로 표시하는 공시항목(Item)에 대해 그 완전성을 확인하였는가?				
지침준수	X	X		표준보고서에 제시하는 <작성지침-Instruction>에 따라 공시항목(Item)별로 요구되는 기재사항을 정확히 모두 작성하였는가?				
Grouping	X		X	계정과목 등에 대한 Grouping의 원칙은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만약, Grouping의 원칙이 변경되었다면 그 원칙변경의 타당성은 평가되었는가?				
기한준수				X 보고서의 최종공시기일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전에 설정된 “공시일정”을 준수하여 취합부서에 제출하였는가?				
이중검증	X			작성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차상위자가 검증을 실시하였는가?				

위의 절차를 수행한 결과,

본인이 공시통제시스템에 제출한 자료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나 허위사실의 기재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통제활동>

A : Accuracy

C : Completeness

V : Validity

T : Timeliness

회 사 명: _____

부서명: _____

작성자명: _____

서명: _____

검토자명: _____

서명: _____

승인자명: _____

서명: _____

II. 체크리스트 2.

(취합작성단계)

보고서명: _____

작성일자: _____

점검목적	통제활동				점검내용	수행여부			
	A	C	V	T		Y	N	N/A	예외사항
계산검증	X				정량적 정보의 비율 및 합계에 대한 계산검증을 수행하여 정량정보의 비율 및 합계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였는가?				
문서검사	X				공시항목(Item)별 작성내역에 대한 맞춤법검사 및 문서오류검사를 실시하여 작성내역의 오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표기단위	X		X		공시항목(Item)별 작성내역의 표기단위가 실제로 작성한 단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는가?				
	X		X		작성단위의 원칙을 일관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 기준일 현재 동 보고서 상 다른 공시항목(Item)의 표기단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는가?				
대사확인	X	X			취합한 최초작성 자료의 이기(移記)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작성자료와의 대사를 통해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주요대상	X		X		주요(중요)대상에 대해 기술하는 공시항목(Item)의 경우, 선정된 주요(중요)대상의 판단기준이 타당한지 확인하였는가?				
기준시점	X		X		공시항목(Item)별 작성내역을 작성기준일(결산일) 시점으로 작성하였는가? 작성기준일(결산일)이 실제내용상의 기준일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점차이를 주기표시하였는가?				
완전성	X	X			“N/A(해당사항 없음)”로 표시하는 공시항목(Item)에 대해 그 완전성을 확인하였는가?				

지침준수	X	X			표준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작성지침-Instruction>에 따라 공시항목(Item)별로 요구되는 기재사항을 정확히 모두 작성하였는가?				
수정보완	X		X		최초작성부서로 부터 취합한 작성내역에 수정/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최초작성부서로 부터 직접 수정/보완된 재작성내역을 수취하여 Confirm 받았는가?				
Grouping	X		X		계정과목 등에 대한 Grouping의 원칙은 동일 보고서의 타 공시항목(Item)에 일관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기한준수				X	보고서의 최종공시기일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전에 설정된 “공시일정”을 준수하여 취합작성하였는가?				

위의 절차를 수행한 결과, 본인이 취합한 자료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나 허위사실의 기재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통제활동>

A : Accuracy

C : Completeness

V : Validity

T : Timeliness

회 사 명: _____

부서명: _____

작성자명: _____

서명: _____

승인자명: _____

서명: _____

Ⅲ. 체크리스트 취합총괄표

보고서명: _____
작성일자: _____

번호	체크리스트 유형	회사명	부서/ 팀명	담당자	승인자	취합여부 (갈음확인여부)		예외사항 (갈음 보고서명)
						Y	N	
1	취합작성							
1	최초작성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위에 기재한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최초작성단계의 체크리스트1.____장과 취합작성
단계의 체크리스트2. 1장을 모두 취합하였습니다.

부서명: _____

작성자명: _____

승인자명: _____

[별첨 2] 「I.부서장 서약서」

I. 부서장 서약서

담당업무명:

직 위:

성 명:

다음의 내용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주)우리금융지주 (이하 “당사”)의 연도 및 보고서명 (이하 “보고서”)의 기재 내용 중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2. 본인이 알고 있는 한, 본인이 검토한 영역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이용하는 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유발시킬 만한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나 허위사실의 기재가 없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한, 본인이 검토한 영역과 관련하여 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 및 기타 재무정보는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영업성과와 현금흐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내부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과 관련된 부정을 그 중요성을 불문하고 상급자에 모두 보고하였습니다.
5. 본인은 보고서의 기준일자 이후부터 서약일 까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 및 재무현황과 관련된 발생사건을 상급자에 모두 보고하였습니다.
6. 본인은 보고서와 동일한 기준일 시점의 타 공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재무제표 및 기타 재무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확인을 본 서약서로 갈음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7. 본인은 당사의 대표이사가 관련규정에서 요구되는 보고서에 대한 서약과 관련하여 본 서약서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고서의 공시 전에 본인이 서약한 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정된 정보를 즉시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 명: _____

날 짜: _____

I. 계열사 CEO 서약서

회 사 명:

직 위:

성 명:

다음의 내용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주)우리금융지주 (이하 “귀사”)의 연도 및 보고서명 (이하 “보고서”)의 기재내용 중 당사가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검토하였습니다.
2. 본인이 알고 있는 한, 본인이 검토한 영역과 관련하여 동 보고서를 이용하는 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유발시킬 만한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나 허위사실의 기재가 없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한, 본인이 검토한 영역과 관련하여 동 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 및 기타재무정보는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영업성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내부통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임직원과 관련된 부정을 그 중요성을 불문하고 귀사에 모두 보고하였습니다.
5. 본인은 보고서의 기준일자 이후부터 서약일 까지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 및 재무현황과 관련된 발생사건을 귀사에 모두 보고하였습니다.
6. 본인은 보고서와 동일한 기준일 시점의 타 공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재무제표 및 기타 재무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확인을 본 서약서로 갈음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7. 본인은 귀사의 대표이사가 관련규정에서 요구되는 동 보고서에 대한 서약과 관련하여 본 서약서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고서의 공시 전에 본인이 서약한 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정된 정보를 즉시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 명:_____

날 짜:_____

II. 서약서 취합총괄표

보고서명: _____

작성일자: _____

번호	회사명	부서/ 팀명	직급	서약자	취합여부 (갈음확인여부)		예외사항 (갈음 보고서명)
					Y	N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위에 기재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서약서 ____장을 모두 취합하였습니다.

부서명: _____

작성자명: _____

승인자명: _____

[별첨 3] 「지배회사의 자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일람표」

지배회사의 자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일람표

대상회사	공시시한	공시의무사항	유가증권공시규정	주요사항보고서
주요 자회사 ^{주)}	당일	중대재해(발생 사실 고용노동부 보고, 중대 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형사처벌)	8조/①항	
	당일	부도, 은행거래정지·금지, 회생절차 파산, 해산	8조/①항	
	익일	유가증권공시규정 제7조제1항 (주요경영사항) 각호 (액면변경, 액면·무액면전환, 최대주주변경, 주총소집결의·주총결의제외)	8조/①항	
모든 자회사	당일	중대재해(발생 사실 고용노동부 보고, 중대 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형사처벌)	8조/②항	
	익일	부도, 은행거래정지·금지, 회생절차 파산, 해산	8조/②항	

주) 주요 자회사의 공시사항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48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8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문으로 공시한다.

- 공시금액 기준 등은 관련 법령 참고하실 것

[별첨 4]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일람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일람표

대상회사	공시시한	공시의무사항	유가증권공시규정	주요사항보고서
주요 종속 회사		가. 존립에 관한 사항		
	당일	(1) 부도, 은행거래 정지 또는 금지	8조의2/①항/1호	법 161/①/1호
	당일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신청	8조의2/①항/1호	법 161/①/3호
	당일	(3) 해산사유 발생	8조의2/①항/1호	법 161/①/4호
		나. 기타 주요경영사항		
	익일	(1) 주식교환 · 이전	8조의2/①항/1호	법 161/①/6호
	익일	(2) 분할 · 합병 · 분할합병 등	8조의2/①항/1호	법 161/①/6호
	익일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 · 중단	8조의2/①항/1호	령 171/③/1호
	익일	(4) 해외증권시장에서의 상장 · 폐지 · 매매거래 정지 등	8조의2/①항/1호	령 171/③/3호
모든 종속 회사 (주요 종속 회사 포함)		가. 존립에 관한 사항		
	당일	(1) 부도, 은행거래 정지 또는 금지	8조의2/①항	법 161/①/1호
	당일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신청	8조의2/①항	법 161/①/3호
	당일	(3) 해산사유 발생	8조의2/①항	법 161/①/4호
		나. 기타주요경영사항		
	익일	(1) 영업활동의 정지	8조의2/①항/2호	법 161/①/2호
	익일	(2) 자본증가 또는 감소 결의	8조의2/①항/3호	법 161/①/5호
	익일	(3) 영업양수도	8조의2/①항/4호/가 나다	법 161/①/7호
	익일	(4) 자산양수도	8조의2/①항/4호/라	법 161/①/7호
	익일	(5) 지주회사의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8조의2/①항/5호	법 161/①/9호
	익일	(6) 증권에 대한 소송 제기	8조의2/①항/6호	령 171/③/2호
	익일	(7) 자산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체결	8조의2/①항/7호	령 171/③/5호
	익일	(8) 중대재해(발생 사실 고용노동부 보고,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형사처벌)	8조의2/①항/8호	

■ 공시금액 기준 등은 관련 법령 참고하실 것